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27호 2015. 2. 3(화)

# 포항시보

## ◀ 훈 령 ▶

○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제298호) ..... 2

## ◀ 고 시 ▶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제2015-4호) ..... 5

○ 도로명주소 고시(제2015-5호)..... 7

○ 포항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5-6호)..... 8

## ◀ 공 고 ▶

○ 포항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형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제2015-4호) ..... 10

○ 도로지정 공고(포항시 남구 공고 2015-26호) ..... 12

○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제2015-104호) ..... 13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제2015-130호) ..... 23

회 람								
--------	--	--	--	--	--	--	--	--

**훈 령**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포 항 시 장



2015년 1월 27일

포항시 훈령 제298호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부서별 근로자 정수의 직종별 책정내역 (제6조제3항 관련)**

## □ 무기계약인력의 정수

구 분	합 계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비고
계	507	126	57	324	
자치행정과	10	10			
예산법무과	1	1			
새마을민원과	1	1			
국제협력관광과	5	3		2	
해양항만과	1	1			
주민복지과	9	9			
노인장애인복지과	1	1			
청 소 과	319	7		312	
건 설 과	1		1		
교통행정과	1	1			
의회사무국	1	1			
남구보건소	14	14			
북구보건소	15	15			
농업기술센터	5	5			
도시건설사업소	33	7	26		
맑은물사업소	25	11	4	10	
평생학습원	12	12			
남 구 청	17	5	12		
북 구 청	19	5	14		
남구읍면동	7	7			
북구읍면동	10	10			

## □ 청원경찰의 정수

부서별	합계	경비 청원경찰	하천감시	비고
계	41	39	2	
국제협력관광과	2	2		
건설과	2	1	1	
안전관리과	1		1	
산림녹지과	4	4		
도시건설사업소	5	5		
맑은물사업소	19	19		
평생학습원	6	6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2	2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5 - 4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86조,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 22.

포 항 시



- 1. 사업시행지 : 포항시 남구 연일읍 괴정리 308-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 칭 : 연일읍 119안전센터 훈련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포항시장(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포항남부소방서장(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890)
  - 4. 사업계획 내용
    - 공공청사 : 9,970㎡
    - 도로(가감속차로)개설 : 연장 L=106m, 폭 B=0~4m
    -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5.12.31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불임
  - 6.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도로)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
-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54-270-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지장물)조사

[포항시 남구]

연일음 과정리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및 내용	
	계			75,206	10,339					
1	연일음 과정리	289-1	대	6796	6,796		포항시			
2	연일음 과정리	308-1	답	992	992		포항시			
3	연일음 과정리	308-2	답	1983	1,983		포항시			
4	연일음 과정리	427	구	65,435	568		국(기획 재정부)			가감속차로 (369㎡)

포항시 고시 제2015 - 5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1월 26일

포항시장



○ 도로명주소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송정로29번길 2 외43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270-3492~349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주소로 인정되므로 각종 민원 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포항시 고시 제2015-6호

### 포항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도시계획도로 외 1개소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 1. 28.

포항시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 가. 교통시설

##### (1) 도로

##### (가)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2	2,696	30,060				1	573	4,584	1	2,123	25,476
광로												
대로												
중로	1	2,123	25,476							1	2,123	25,476
소로	1	573	4,584				1	573	4,584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	12	보조 간선 도로	2,123	중로1-17 (연일읍 오천리 505-1)	광로2-2 (대송면 공수리 238-1)	일반 도로	-	경북고 제93-92호 1993.03.16	-
변경	중로	3	2	12~20	보조 간선 도로	2,123	중로1-17 (연일읍 오천리 505-1)	광로2-2 (대송면 공수리 238-1)	일반 도로	-	경북고 제93-92호 1993.03.16	도로 선형변경 (302m)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573	중로1-17 (대송면 송동리 824-6)	중로1-41 (대송면 송동리 357-2)	일반 도로	-	포항고 제01-552호 2001.12.06	-
변경	소로	2	9	8	국지 도로	573	중로1-17 (대송면 송동리 824-6)	중로1-41 (대송면 송동리 357-2)	일반 도로	-	포항고 제01-552호 2001.12.06	도로 선형변경 (450m)

(다) 도로 변경 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중로3-2호선	중로3-2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 구간 선형 변경 L = 2,123m 중 302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일읍 오천리~대송면 공수리간 도시계획 도로(중3-2) 개설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일부 구간에 대하여 선형을 변경하고자 함</li> </ul>
소로2-9호선	소로2-9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 구간 선형 변경 L = 573m 중 450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송면 송동리 도시계획도로(소2-9) 개설과 관련하여 지형을 고려한 적절한 노선을 위하여 일부구간 선형을 변경하고자 함</li> </ul>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음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5-4호

포항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1.  
포 항 시 장



포항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행업체의 종사원 및 보유 장비를 강화하여 업체의 전문성 및 시행 능력을 향상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행업 종사자의 기준 강화(안 제7조제1항)
  - 현장대리인 1명 이상 ⇒ 시공기술자 2명 이상
- 나. 대행업 보유 장비 기준에 굴삭기(0.12m³) 1대 이상 보유 또는 월임차로 확보 추가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관련법령

- 「포항시 수도 급수 조례」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2.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상수도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270-5375, FAX 270-0069, E-mail : sidang0120@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남구 공고 2015-26호 공고

###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그 위치를 지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건명 : 도로의 지정
- 2. 도로의 위치지정내용

대지위치	도로지번	지정면적(m <sup>2</sup> )	도로길이(m)	도로너비(m) (평균값)	지정일자	비고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236-6,209번지	88	34.5m	3m	2015.1.28	

- 3. 도면 : 남구청 건축지적과 비치

2015 1. 28.  
포항시 남구청장

문의처 : 건축과(054-270-6483)

## 포항시 공고 제2015 - 104호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23일  
포 항 시 장



##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2015년 3월 시행 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련 특례 신설 (안 제11조의 2)
  -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

### 3.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6조
-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 「지방세법」 제128조
- 자동차세 신고업무 협약서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5년 1월 23일 ~ 2015년 2월 12일(21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 (참조:재정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세정과(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 전화 054)270-2486, fax 054)270-2490

포항시 조례 제 호

###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련 특례)

-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신고업무를 대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1조의2(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련 특례)</p> <p>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신고업무를 대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 관 련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0.19.]





- 전국 자동차등록제 관련 -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탁 시·도간 협약체결 권한 위임서]

「지방세기본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대행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포항시장은 아래에서 정한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탁 시·도간 협약 체결 권한을 경상북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014년 12월 3일

포 항 시 장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자동차세 신고대행 업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대행 하여 주민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과 자동차 등록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① 자동차세 신고대행 업무를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동차세를 신고 수리함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을 위·수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자동차세를 수리함”이라 함은 자동차 등록 전국 무관할 제도와 관련

하여 자동차세 신고 위탁기관을 대신하여 자동차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위·수탁 기관)**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세 신고대행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위탁 및 수탁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무의 관리 및 처리 방법)** ① 자동차세 신고업무 시행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대행 업무를 수탁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위탁한 자동차세 신고대행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세 신고대행을 받은 이후에 추가로 과세 또는 환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그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세 신고대행을 받은 이후에 그 신고대행 자치단체는 신고받은 관련 자료를 신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탁기관에 전산송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동차세 관련 문서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 이 협약은 2015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공고 제2015 - 13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포항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포항시청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30 일

포 항 시



-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2. 열람장소 : 포항시청 건설과(☎054-270-3283)
-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내용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대송 도시계획도로 (중1-17)개설공사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일원	도로개설 L=0,4km B=20m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포항시장

- 4. 관계도서 및 기타 : 포항시청 건설과에 비치